



의안번호	제 2016 - 18 호
보 고 연 월 일	2016. 7. 11. (제7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6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40
1. 개요	40
2. 추진 경과	40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1
1. 개요	41
2. 추진 경과	41
IV.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에 대 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및 책자 발간	42
1. 개요	42
2. 분석 대상	42
3. 분석의 의의	42
4. 조사 및 분석 내용	42
V.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 회 결과 보고	43

1. 개요	43
2.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43
VI. 외국 양형제도 파악을 위한 교류	60
1. 개요	60
2. 캐나다 대법원 및 미연방 제7항소법원 등 방문	60
3. 세부 일정	61
V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62
VIII. 2016 양형기준 책자 발간	63
1. 개요	63
2. 추진 경과	63
3. 제작 내역	63
4. 국회 보고	63
5. 기타 기관 배부	64
IX. 전문위원 개임, 연임 위촉 및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 여식 개최	65
1. 전문위원 개임, 연임 위촉	65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67
X.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68
1. 개요	68
2. 관련 규정	68

3. 공개 방법	68
4. 추진 일정	69
 X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보고	 70
1. 개요	70
2. 관련 규정	70
3. 의견수렴 계획	70
4. 시행 일정	72
 X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73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73
2. 서면 질의 및 회신	77
 □ 별지1. 「세부범죄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별첨 관보게재용 양형기준	

I.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6. 1.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6. 1.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92	1	93
	강도살인미수	28	0	28
	살인	1,898	16	1,914
	살인교사	6	2	8
	살인미수	2,558	20	2,578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47	1	48
	유사강간살인	1	0	1
	존속살해	191	1	192
	존속살해미수	101	0	101
	특가법(보복살인등)	2	0	2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4,931	41	4,972
뇌물범죄	뇌물공여	3,314	24	3,338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5	0	5
	뇌물공여의사표시	37	1	38
	뇌물수수	2,341	12	2,353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9	0	9
	부정처사후수뢰	115	0	115
	수뢰후부정처사	118	0	118
	제3자뇌물교부	184	6	190
	제3자뇌물취득	206	2	20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특가법(뇌물)	783	1	784
	특가법(뇌물)교사	1	0	1
	전체	7,117	46	7,163
성범죄	강간	1,687	12	1,699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978	2	980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586	6	1,592
	강도강간	92	1	93
	강제추행	14,209	128	14,337
	강제추행상해	229	1	230
	강제추행치상	681	2	683
	미성년자의제강간	133	3	13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2	0	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49	0	14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4	0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	1	14
	상습강제추행	21	0	21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76	0	776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81	0	18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8	1	209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0	1	20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420	1	42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51	0	15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5	0	19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1	0	2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8	0	5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515	0	515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67	1	368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6	0	12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97	3	1,00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133	5	1,13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39	0	3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66	1	16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58	1	5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64	0	6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32	0	3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3	0	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588	7	59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571	0	57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등)	253	4	25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426	4	43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13	0	21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70	1	7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53	0	5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63	3	56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37	1	3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12	0	1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11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97	0	97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유사강간)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간)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16	0	1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287	4	1,29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84	3	8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14	0	1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34	3	3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69	1	70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88	6	39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508	3	51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교사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62	1	6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13	1	11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365	11	1,37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62	5	367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15	0	1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유사강간)	3	0	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240	0	24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679	5	68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57	0	5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431	12	3,44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38	1	3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58	1	5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272	25	2,29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04	6	3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37	0	23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35	1	13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64	1	6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21	0	2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01	4	40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69	0	6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10	0	10
	유사강간	212	3	215
	유사강간상해	17	0	17
	유사강간치상	32	0	32
	준강간	1,076	6	1,082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7	0	7
	준강간치상	100	2	102
	준강제추행	2,078	14	2,092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21	0	21
	준유사강간	112	3	115
	준유사강간상해	1	0	1
	준유사강간치상	3	0	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전체	44,929	313	45,242
강도 범죄	강도	807	0	807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3,548	19	3,567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3	0	23
	강도치상	290	0	290
	상습특수강도	1	0	1
	준강도	482	4	486
	준강도교사	1	0	1
	준특수강도	72	0	72
	특가법(강도)	42	0	4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9	1	70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3,028	18	3,046
	전체	8,437	42	8,479
횡령·배임 범죄	배임	2,968	10	2,978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3,813	38	3,851
	업무상배임교사	1	0	1
	업무상횡령	15,651	112	15,763
	업무상횡령교사	1	0	1
	특경가법(배임)	1,773	7	1,780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2,525	10	2,535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4,430	109	14,539
	횡령교사	2	0	2
	전체	41,167	286	41,453
위증 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6	0	6
	모해위증	106	1	107
	모해위증교사	4	0	4
	위증	7,496	89	7,585
	위증교사	1,020	19	1,039
	전체	8,632	109	8,74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무고범죄	무고	10,522	59	10,581
	무고교사	68	1	69
	특가법(무고)	37	0	37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10,628	60	10,688
총 계		125,841	897	126,738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6. 1.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5. 12.	2016. 1.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7	0	7
	간음유인	21	1	22
	국외이송유인	1	0	1
	미성년자약취	65	0	65
	미성년자유인	42	1	43
	성매매약취	15	0	15
	성매매유인	7	0	7
	성매매인신매매	2	0	2
	영리약취	9	0	9
	영리유인	52	0	52
	인신매매	1	0	1
	인질강요	1	0	1
	인질상해	0	1	1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7	0	27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9	0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314	3	317
사기범죄	사기	171,957	2,009	173,966
	사기교사	8	0	8
	상습사기	561	6	567
	상습준사기	1	0	1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6	0	6
	준사기	145	4	149
	컴퓨터등사용사기	2,489	33	2,522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5. 12.	2016. 1.	전체
	특경가법(사기)	4,372	70	4,442
	전체	179,539	2,122	181,661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148	0	148
	산림보호법위반	229	0	2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954	11	96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2	0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29	0	29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3	0	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26	0	26
	상습절도	214	0	214
	상습특수절도	64	0	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834	35	2,8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6	0	6
	야간방실침입절도	228	1	229
	야간선박침입절도	10	0	10
	야간주거침입절도	1,668	14	1,682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30,396	370	30,766
	절도교사	83	1	84
	특가법(산림)	170	0	170
	특가법(절도)	9,200	17	9,217
	특수절도	14,798	140	14,938
	특수절도교사	44	2	46
	전체	61,107	591	61,698
공문서 범죄	공문서변조	440	2	442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1,515	10	1,525
	공문서부정행사교사	11	0	11
	공문서위조	1,257	7	1,264
	공문서위조교사	8	0	8
	공전자기록등변작	2	0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938	42	1,980
	공전자기록등위작	76	0	76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85	6	691
	변조공문서행사	21	0	2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80	0	80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5. 12.	2016. 1.	전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6	0	36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6	0	6
	위조공문서행사	154	2	156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224	1	225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2	0	12
	전체	6,471	70	6,541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276	0	276
	사도화변조	1	0	1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271	12	283
	사문서변조교사	2	0	2
	사문서부정행사	20	0	20
	사문서위조	6,413	100	6,513
	사문서위조교사	23	0	23
	사전자기록등변작	12	0	12
	사전자기록등위작	93	0	93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3	0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6	0	6
	위조사문서행사	361	4	365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36	4	240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102	0	102
	허위진단서작성	40	0	40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7,873	120	7,993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8,545	439	28,984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4	0	4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2,054	17	2,071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42	0	42
	공용서류손상	201	2	203
	공용서류은닉	11	0	11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5. 12.	2016. 1.	전체
	위계공무집행방해	1,231	21	1,25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4	0	4
	특수공무집행방해	1,554	33	1,587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748	14	762
	특수공용물건손상	39	3	42
	전체	34,446	530	34,976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678	4	682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위생관리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2,590	27	2,617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6	0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58	0	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045	4	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약품제조등)	45	0	45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7,166	134	7,300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747	20	1,767
	약사법위반교사	2	1	3
	의료법위반	3,317	31	3,348
	의료법위반교사	21	0	2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6	0	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010	24	1,0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100	3	103
	전체	17,816	248	18,064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571	17	2,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23	1	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101	240	15,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1	0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156	1	1,157
	특가법(마약)	7	0	7
	특가법(향정)	53	0	5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3	5	18
	전체	19,125	264	19,389
총 계		326,691	3,948	330,639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6. 1.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184	10	1,19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01	0	101
	증권거래법위반	99	1	100
	특경가법(수재등)	180	0	180
	특경가법(알선수재)	440	5	445
	특경가법(증재등)	138	0	138
	전체	2,142	16	2,158
지식재산 권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74	2	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2	0	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56	3	259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	0	11
	상표법위반	2,992	84	3,076
	실용신안법위반	21	0	21
	저작권법위반	2,129	34	2,163
	특허법위반	54	2	56
	전체	5,549	125	5,674
폭력범죄	상습상해	11	0	11
	상습존속상해	1	0	1
	상습존속폭행	3	0	3
	상습특수폭행	1	0	1
	상습특수협박	1	0	1
	상습폭행	15	4	19
	상습협박	2	1	3
	상해	52,964	833	53,797
	상해교사	9	2	11
	상해치사	289	1	290
	존속상해	328	4	332
	존속상해치사	29	0	29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105	2	107
	존속폭행치사	7	0	7
	존속폭행치상	6	0	6
	존속협박	29	1	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중상해	173	4	177
	특가법(보복범죄등)	47	0	47
	특가법(보복상해등)	169	2	171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2	0	2
	특가법(보복폭행등)	149	4	153
	특가법(보복협박등)	352	3	355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786	59	2,845
	특수존속폭행	3	0	3
	특수존속협박	9	3	12
	특수폭행	577	69	646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8	2	10
	특수협박	790	93	883
	폭처법(공동상해)	12,853	188	13,041
	폭처법(공동상해)교사	6	0	6
	폭처법(공동존속상해)	21	0	21
	폭처법(공동폭행)	3,634	65	3,699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466	4	470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14	1	15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2	0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56	0	5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7	0	1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2	0	12
	폭처법(상습상해)	274	0	274
	폭처법(상습존속상해)	10	0	10
	폭처법(상습존속폭행)	21	0	21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23	0	2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9	0	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7	0	7
	폭처법(상습폭행)	260	0	260
	폭처법(상습협박)	51	0	51
	폭처법(야간·공동상해)	32	0	32
	폭처법(야간·공동폭행)	2	0	2
	폭처법(야간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9,240	69	19,309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17	0	1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10	0	110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1	0	2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63	0	6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4,462	1	4,463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787	0	5,787
	폭행	24,320	517	24,837
	폭행교사	1	0	1
	폭행치사	241	4	245
	폭행치상	846	23	869
	협박	3,329	75	3,404
	협박교사	2	0	2
	전체	135,115	2,034	137,149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7,019	742	37,761
	특가법(도주차량)	16,972	233	17,205
	특가법(도주차량)교사	5	0	5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0,596	157	10,753
	전체	64,592	1,132	65,724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3,003	5	3,008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0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32	0	132
	전체	3,136	5	3,141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3,712	86	3,798
	지방세기본법위반	20	0	20
	특가법(조세)	179	4	183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624	8	632
	전체	4,535	98	4,633
공갈범죄	공갈	1,100	23	1,123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상습공갈	2	0	2
	특경가법(공갈)	29	1	30
	특수공갈	0	2	2
	폭처법(공동공갈)	1,319	23	1,342
	폭처법(공동공갈)교사	3	0	3
	폭처법(상습공갈)	83	0	8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공갈)	1	0	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2	0	2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68	0	68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전체	2,608	49	2,657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3	0	13
	공용자동차방화	2	0	2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일반건조물방화	120	0	120
	일반건조물방화교사	1	0	1
	일반물건방화	134	6	140
	일반물건방화교사	1	0	1
	일반자동차방화	77	2	79
	현존건조물방화	49	0	49
	현존건조물방화치상	14	0	14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316	7	32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7	0	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40	2	42
	현주선박방화	1	0	1
	전체	779	17	796
총 계		218,456	3,476	221,932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라. 제4기 대상범죄(2014. 7. 1. ~ 2016. 1. 31.)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	------	-------------------------	----------	----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배임수증 재범죄	배임수재	583	27	610
	배임증재	361	21	382
	전체	944	48	992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770	42	812
	전체	770	42	812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26	8	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19	1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4,763	133	4,89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73	1	74
	아동·청소년성보호법(매매)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318	7	32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164	7	171
	전체	5,564	157	5,721
체포·감금· 유기·학 대범죄	감금	91	0	91
	감금치상	42	0	42
	노인복지법위반	15	0	15
	아동복지법위반	222	4	226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5	0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4	0	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1	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84	5	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4	0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1	0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아동학대)	34	2	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	0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2	0	2
	영아유기	9	0	9
	영아유기치사	1	0	1
	유기	2	0	2
	유기치사	9	0	9
	존속감금	3	0	3
	존속유기	1	0	1
	존속체포치상교사	2	0	2
	중감금	3	0	3
	중감금치상	9	0	9
	청소년보호법위반	1,116	73	1,189
	체포	2	0	2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특수감금	5	0	5
	특수감금치상	1	0	1
	특수체포치상	0	1	1
	폭처법(공동감금)	141	9	150
	폭처법(공동존속감금)	4	0	4
	폭처법(공동체포)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35	1	36
	학대	1	0	1
	전체	1,861	95	1,956
장물 범죄	상습장물알선	1	0	1
	상습장물취득	13	0	13
	장물보관	17	2	19
	장물알선	38	3	41
	장물양도	6	0	6
	장물운반	12	3	15
	장물취득	226	18	244
	특가법(장물)	2	0	2
	전체	315	26	341
권리행사 방해범죄	강요	17	2	19
	강제집행면탈	145	8	153
	권리행사방해	375	24	399
	권리행사방해교사	1	0	1
	폭처법(공동강요)	14	0	14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4	0	4
	전체	556	34	590
업무방해 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20	38	258
	경매방해	72	7	79
	업무방해	2,796	325	3,121
	업무방해교사	4	1	5
	입찰방해	66	1	67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2	0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6	4	1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교사	1	1	2
	전체	3,167	377	3,544
손괴범죄	문서손괴	14	10	24
	재물손괴	948	149	1,097
	재물손괴교사	3	0	3

범죄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재물손괴치상	4	0	4
	전자기록등손괴	2	0	2
	특수재물손괴	66	19	85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121	11	13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	0	1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52	1	153
	전체	1,315	190	1,505
사행성· 게임물범 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738	128	1,866
	경륜경정법위반	2	0	2
	관광진흥법위반	9	1	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30	9	1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262	41	303
	도박개장	121	14	135
	도박공간개설	62	43	105
	도박장소개설	110	6	11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62	16	178
	한국마사회법위반	111	12	12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15	1	16
	전체	2,722	271	2,993
총 계		17,214	1,240	18,454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접수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6. 1. 31.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6.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5. 12.	살인범죄	수	4,540	3	0	4,543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3,408	2,155	100	5,663
		비율	60.2%	38.1%	1.8%	100.0%
	성범죄	수	25,938	10,785	1,981	38,704
		비율	67.0%	27.9%	5.1%	100.0%
	강도범죄	수	7,535	54	0	7,589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5,478	24,729	6,724	36,931
		비율	14.8%	67.0%	18.2%	100.0%
	위증범죄	수	158	5,912	1,811	7,881
		비율	2.0%	75.0%	23.0%	100.0%
	무고범죄	수	311	6,739	2,221	9,271
		비율	3.4%	72.7%	24.0%	100.0%
	전체	수	47,368	50,377	12,837	110,582
		비율	42.8%	45.6%	11.6%	100.0%
2016. 1.	살인범죄	수	50	0	0	50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64	40	0	104
		비율	61.5%	38.5%	0.0%	100.0%
	성범죄	수	445	313	2	760
		비율	58.6%	41.2%	0.3%	100.0%
	강도범죄	수	58	0	0	58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102	324	81	507
		비율	20.1%	63.9%	16.0%	100.0%
	위증범죄	수	1	102	22	125
		비율	0.8%	81.6%	17.6%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무고범죄	수	0	90	28	118
		비율	0.0%	76.3%	23.7%	100.0%
	전체	수	720	869	133	1,722
		비율	41.8%	50.5%	7.7%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6.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5. 12.	약취·유인범죄	수	215	88	1	304
		비율	70.7%	28.9%	0.3%	100.0%
	사기범죄	수	9,563	118,874	29,445	157,882
		비율	6.1%	75.3%	18.7%	100.0%
	절도범죄	수	5,145	42,019	10,201	57,365
		비율	9.0%	73.2%	17.8%	100.0%
	공문서범죄	수	362	3,882	1,404	5,648
		비율	6.4%	68.7%	24.9%	100.0%
	사문서범죄	수	342	5,625	2,450	8,417
		비율	4.1%	66.8%	29.1%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1,462	22,900	8,253	32,615
		비율	4.5%	70.2%	25.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383	5,225	10,462	16,070
		비율	2.4%	32.5%	65.1%	100.0%
	마약범죄	수	2,558	14,697	290	17,545
		비율	14.6%	83.8%	1.7%	100.0%
	전체	수	20,030	213,310	62,506	295,846
		비율	6.8%	72.1%	21.1%	100.0%
2016. 1.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수	1	1	0	2
		비율	50.0%	50.0%	0.0%	100.0%
	사기범죄	수	309	3,222	512	4,043
		비율	7.6%	79.7%	12.7%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절도범죄	수	59	733	146	938
		비율	6.3%	78.1%	15.6%	100.0%
	공문서범죄	수	3	78	28	109
		비율	2.8%	71.6%	25.7%	100.0%
	사문서범죄	수	9	125	50	184
		비율	4.9%	67.9%	27.2%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30	641	34	705
		비율	4.3%	90.9%	4.8%	100.0%
	식품·보건범죄	수	19	136	170	325
		비율	5.8%	41.8%	52.3%	100.0%
	마약범죄	수	57	324	6	387
		비율	14.7%	83.7%	1.6%	100.0%
	전체	수	487	5,260	946	6,693
		비율	7.3%	78.6%	14.1%	100.0%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6.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5. 12.	증권·금융범죄	수	642	887	120	1,649
		비율	38.9%	53.8%	7.3%	100.0%
	지식재산범죄	수	36	1,932	2,998	4,966
		비율	0.7%	38.9%	60.4%	100.0%
	폭력범죄	수	5,704	66,806	52,374	124,884
		비율	4.6%	53.5%	41.9%	100.0%
	교통범죄	수	1,597	42,612	16,629	60,838
		비율	2.6%	70.0%	27.3%	100.0%
	선거범죄	수	3,084	70	0	3,154
		비율	97.8%	2.2%	0.0%	100.0%
	조세범죄	수	847	2,119	769	3,735
		비율	22.7%	56.7%	20.6%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공갈범죄	수	223	1,980	327	2,530
		비율	8.8%	78.3%	12.9%	100.0%
	방화범죄	수	786	19	5	810
		비율	97.0%	2.3%	0.6%	100.0%
	전체	수	12,919	116,425	73,222	202,566
		비율	6.4%	57.5%	36.1%	100.0%
2016. 1.	증권·금융범죄	수	33	23	3	59
		비율	55.9%	39.0%	5.1%	100.0%
	지식재산범죄	수	2	43	78	123
		비율	1.6%	35.0%	63.4%	100.0%
	폭력범죄	수	151	1,452	1,087	2,690
		비율	5.6%	54.0%	40.4%	100.0%
	교통범죄	수	10	960	340	1,310
		비율	0.8%	73.3%	26.0%	100.0%
	선거범죄	수	11	1	0	12
		비율	91.7%	8.3%	0.0%	100.0%
	조세범죄	수	44	86	13	143
		비율	30.8%	60.1%	9.1%	100.0%
	공갈범죄	수	4	68	12	84
		비율	4.8%	81.0%	14.3%	100.0%
	방화범죄	수	31	1	0	32
		비율	96.9%	3.1%	0.0%	100.0%
	전체	수	286	2,634	1,533	4,453
		비율	6.4%	59.2%	34.4%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6. 1.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7. ~ 2015. 12.	배임수증재범죄	수	303	436	44	783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38.7%	55.7%	5.6%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05	372	47	524
		비율	20.0%	71.0%	9.0%	100.0%
	성매매범죄	수	459	3,591	821	4,871
		비율	9.4%	73.7%	16.9%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수	112	473	930	1,515
		비율	7.4%	31.2%	61.4%	100.0%
	장물범죄	수	3	101	49	153
		비율	2.0%	66.0%	32.0%	100.0%
	권리행사방해범죄	수	7	118	78	203
		비율	3.4%	58.1%	38.4%	100.0%
	업무방해범죄	수	54	703	876	1,633
		비율	3.3%	43.0%	53.6%	100.0%
	손괴범죄	수	31	281	408	720
		비율	4.3%	39.0%	56.7%	100.0%
	사행성·게임물범죄	수	4	1,118	347	1,469
		비율	0.3%	76.1%	23.6%	100.0%
	전체	수	1,078	7,193	3,600	11,871
		비율	9.1%	60.6%	30.3%	100.0%
2016. 1.	배임수증재범죄	수	42	16	7	65
		비율	64.6%	24.6%	10.8%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6	72	5	83
		비율	7.2%	86.7%	6.0%	100.0%
	성매매범죄	수	47	179	52	278
		비율	16.9%	64.4%	18.7%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수	18	41	66	125
		비율	14.4%	32.8%	52.8%	100.0%
	장물범죄	수	2	30	7	39
		비율	5.1%	76.9%	17.9%	100.0%
	권리행사방해범죄	수	0	32	25	57
		비율	0.0%	56.1%	43.9%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업무방해범죄	수	5	195	161	361
		비율	1.4%	54.0%	44.6%	100.0%
	손괴범죄	수	4	63	93	160
		비율	2.5%	39.4%	58.1%	100.0%
	사행성·게임물범죄	수	0	356	66	422
		비율	0.0%	84.4%	15.6%	100.0%
	전체	수	124	984	482	1,590
		비율	7.8%	61.9%	30.3%	100.0%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6.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70	1	71
	강도살인미수	27	0	27
	살인	1,751	20	1,771
	살인교사	5	0	5
	살인미수	2,363	27	2,390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41	0	4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76	0	176
	존속살해미수	95	2	97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3	0	3
	전체	4,543	50	4,593
뇌물범죄	뇌물공여	2,619	52	2,67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공여약속	2	0	2
	뇌물공여의사표시	19	2	21
	뇌물수수	1,806	33	1,839
	뇌물요구	7	0	7
	부정처사후수뢰	88	2	90
	사전뇌물수수	2	0	2
	수뢰후부정처사	110	0	110
	제3자뇌물교부	150	4	154
	제3자뇌물취득	167	2	169
	특가법(뇌물)	689	9	698
	특가법(뇌물)교사	1	0	1
	전체	5,663	104	5,767
성범죄	강간	1,333	43	1,376
	강간미수	1	0	1
	강간미수상해	4	2	6
	강간미수치상	1	1	2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908	10	918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428	5	1,433
	강도강간	86	0	86
	강제추행	11,533	307	11,840
	강제추행미수	3	0	3
	강제추행상해	233	3	236
	강제추행치상	645	7	652
	강간치상	1	0	1
	미성년자간음	7	0	7
	미성년자의제강간	114	4	118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1	0	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9	3	1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8	3	11
	미성년자추행	1	0	1
	상습강제추행	15	0	15
	상습준강제추행	2	0	2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89	0	689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5	0	16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69	0	169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2	0	2
	성폭력범죄(장애인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8	0	178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97	0	39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4	0	13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68	0	16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9	0	1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86	0	386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48	0	348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909	3	91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033	28	1,06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40	3	4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64	6	17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58	1	5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67	0	6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21	2	2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509	6	51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80	5	485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200	5	20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66	13	37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51	1	35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25	8	23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강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65	2	6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52	0	5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152	2	15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27	2	2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11	1	1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9	0	9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80	0	80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유사강간)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14	1	15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유사강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1,238	5	1,24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미수)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77	4	8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13	0	1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23	2	2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53	6	5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3	0	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32	8	34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99	9	50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교사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5	1	5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23	2	12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088	26	1,11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강간등)	374	1	37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강제추행)	15	1	16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유사강간)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208	5	21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521	17	53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61	0	6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166	12	3,17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31	0	3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46	1	4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061	42	2,10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08	13	32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35	11	24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강간)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29	6	1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62	3	6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8	0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44	10	45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42	2	4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8	3	11
	유사강간	164	9	173
	유사강간상해	14	2	16
	유사강간치사	1	0	1
	유사강간치상	26	2	28
	준강간	894	21	915
	준강간교사	1	0	1
	준강간상해	6	0	6
	준강간치상	93	2	95
	준강제추행	1,754	47	1,801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9	0	19
	준유사강간	98	8	106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준유사강간상해	1	0	1
	준유사강간치사	1	0	1
	준유사강간치상	3	0	3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90	0	190
	추행	2	1	3
	전체	38,704	760	39,464
강도 범죄	강도	759	5	764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959	20	2,979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34	0	34
	강도치상	250	2	252
	상습강도	1	0	1
	상습특수강도	1	0	1
	준강도	458	4	462
	준특수강도	71	0	71
	특가법(강도)	47	0	4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69	0	69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873	27	2,900
	전체	7,589	58	7,647
횡령·배임 범죄	배임	2,639	18	2,657
	배임교사	3	0	3
	업무상배임	2,982	42	3,024
	업무상배임교사	3	0	3
	업무상횡령	14,323	188	14,511
	업무상횡령교사	1	0	1
	특경가법(배임)	1,546	18	1,564
	특경가법(횡령)	2,440	45	2,485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2,990	196	13,186
	횡령교사	3	0	3
	전체	36,931	507	37,438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5. 12.	2016. 1.	전체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0	1
	모해위증	102	1	103
	모해위증교사	5	0	5
	위증	6,696	101	6,797
	위증교사	1,077	23	1,100
	전체	7,881	125	8,006
무고범죄	무고	9,170	117	9,287
	무고교사	60	1	61
	특가법(무고)	40	0	40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9,271	118	9,389
총 계		110,582	1,722	112,304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6.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7	0	7
	간음유인	18	0	18
	국외이송약취	1	0	1
	미성년자약취	64	1	65
	미성년자유인	43	1	44
	성매매약취	8	0	8
	성매매유인	1	0	1
	성매매인신매매	1	0	1
	약취유인	1	0	1
	영리약취	7	0	7
	영리유인	34	0	34
	추행유인	6	0	6
	특가법(약취·유인)	26	0	26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7	0	87
	전체	304	2	306
사기범죄	사기	150,535	3,829	154,364
	사기교사	8	0	8
	상습사기	507	11	518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6	0	6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전체
	준사기	124	3	127
	컴퓨터등사용사기	2,700	93	2,793
	특경가법(사기)	4,002	107	4,109
	전체	157,882	4,043	161,925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122	9	131
	산림보호법위반	188	0	18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831	16	8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	1	0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4	0	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4	0	4
	상습절도	26	1	27
	상습특수절도	8	1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498	55	2,5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5	0	5
	야간방실침입절도	232	4	236
	야간선박침입절도	7	0	7
	야간주거물침입절도	1	0	1
	야간주거침입절도	1,789	30	1,819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28,245	538	28,783
	절도교사	74	3	77
	주거침입절도	1	0	1
	특가법(산림)	138	3	141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8,185	13	8,198
	특수절도	14,961	264	15,225
	특수절도교사	41	1	42
	전체	57,365	938	58,303
공문서 범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425	12	437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970	19	989
	공문서부정행사교사	8	0	8
	공문서위조	1,224	22	1,246
	공문서위조교사	10	0	10
	공전자기록등변작	2	0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950	38	1,988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전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68	2	70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34	13	647
	변조공문서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0	4
	위조공문서행사	109	0	109
	자격모용공문서작성	3	0	3
	허위공문서작성	220	2	222
	허위공문서작성교사	2	1	3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	0	2
	전체	5,648	109	5,757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31	3	34
	사문서변조	429	10	439
	사문서변조교사	1	0	1
	사문서부정행사	8	0	8
	사문서위조	7,267	151	7,418
	사문서위조교사	19	0	19
	사문서위조행사	3	0	3
	사전자기기록등변작	10	0	10
	사전자기기록등위변작	2	0	2
	사전자기기록등위작	92	2	94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3	0	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223	6	229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29	12	241
	허위작성진단서행사	4	0	4
	허위진단서작성	93	0	93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8,417	184	8,601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6,527	599	27,126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전체
	공용물건손상	2,210	31	2,241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42	1	43
	공용서류손상	213	1	214
	공용서류은닉	12	0	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3	0	3
	위계공무집행방해	1,163	24	1,187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4	0	4
	특수공무방해치상	1	0	1
	특수공무집행방해	1,539	35	1,5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846	13	859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39	1	40
	전체	32,615	705	33,320
식품·보 건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567	14	5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444	35	2,47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8	0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59	2	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003	10	1,0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7	5	32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2	0	2
	식품위생법위반	6,463	172	6,635
	식품위생법위반교사	4	0	4
	약사법위반	1,548	13	1,561
	약사법위반교사	1	0	1
	의료법위반	2,901	52	2,953
	의료법위반교사	21	0	2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1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915	19	9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92	2	94
	전체	16,070	325	16,395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31	28	2,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03	5	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4,135	342	14,477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5. 12.	2016. 1.	전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1	0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133	1	1,134
	특가법(마약)	5	0	5
	특가법(향정)	35	0	3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	11	13
	전체	17,545	387	17,932
총 계		295,846	6,693	302,539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6.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924	38	962
	조세범처벌법위반	1	0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44	4	48
	증권거래법위반	82	2	84
	특경가법(수재등)	132	1	133
	특경가법(알선수재)	362	12	374
	특경가법(증재등)	104	2	106
	전체	1,649	59	1,708
지식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57	2	5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8	0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 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 외누설등)	1	0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 설등)	118	2	1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보 호등)	10	0	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	0	10
	상표법위반	2,823	86	2,909
	실용신안법위반	18	0	18
	저작권법위반	1,869	32	1,901
	특허법위반	49	1	50
	전체	4,966	123	5,089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폭력범죄	폭처법(공동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	0	1
	상습상해	10	2	12
	상습존속폭행	4	0	4
	상습폭행	13	5	18
	상습협박	2	0	2
	상해	48,509	1,041	49,550
	상해교사	9	0	9
	상해치사	288	8	296
	존속상해	327	10	337
	존속상해치사	27	1	28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93	0	93
	존속폭행치사	7	0	7
	존속폭행치상	10	0	10
	존속협박	21	3	24
	중상해	152	4	156
	특가법(보복범죄등)	173	0	173
	특가법(보복상해등)	154	5	159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3	0	3
	특가법(보복폭행등)	139	3	142
	특가법(보복협박등)	357	14	371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620	56	2,676
	특수상해	0	144	144
	특수존속상해	0	1	1
	특수존속폭행	3	1	4
	특수존속협박	3	3	6
	특수폭행	604	111	715
	특수폭행치상	6	0	6
	특수협박	822	181	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0	1
	폭처법(공동상해)	12,076	261	12,337
	폭처법(공동상해)교사	9	0	9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6	0	16
	폭처법(공동폭행)	3,117	76	3,193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폭처법(공동폭행)교사	6	0	6
	폭처법(공동협박)	416	12	428
	폭처법(공동협박)교사	2	0	2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0	7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9	0	9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1	0	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36	0	3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3	0	1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1	0	11
	폭처법(상습상해)	262	1	263
	폭처법(상습존속상해)	7	0	7
	폭처법(상습존속폭행)	18	2	20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32	0	3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폭행)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7	0	7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7	0	7
	폭처법(상습폭행)	253	3	256
	폭처법(상습협박)	48	1	49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6	0	26
	폭처법(야간·공동폭행)	1	0	1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8,733	63	18,796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11	1	12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30	0	130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29	0	29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85	0	85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4,174	5	4,179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4	0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888	20	5,908
	폭처법(특수협박)	1	0	1
	폭행	21,058	541	21,599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218	4	222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폭행치상	841	23	864
	협박	2,954	84	3,038
	협박교사	3	0	3
	전체	124,884	2,690	127,574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4,858	771	35,629
	특가법(도주차량)	15,853	350	16,203
	특가법(도주차량)교사	4	0	4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0,123	189	10,312
	전체	60,838	1,310	62,148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3,009	12	3,021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0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44	0	144
	전체	3,154	12	3,166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3,109	115	3,224
	지방세법위반	2	0	2
	특가법(조세)	134	7	141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490	21	511
	전체	3,735	143	3,878
공갈범죄	공갈	1,068	43	1,111
	공동공갈	0	1	1
	상습공갈	4	0	4
	특경가법(공갈)	23	0	23
	폭처법(공동공갈)	1,235	40	1,275
	폭처법(공동공갈)교사	4	0	4
	폭처법(상습공갈)	108	0	108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86	0	86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1	0	1
	전체	2,530	84	2,614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0	0	10
	공용자동차방화	2	0	2
	공익건조물방화	2	0	2
	산림보호법위반	10	2	12
	일반건조물방화	113	8	121
	일반건조물방화교사	3	0	3
	일반물건방화	123	6	129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5. 12.	2016. 1.	전체
	일반물건방화교사	1	0	1
	일반선박방화교사	1	0	1
	일반자동차방화	88	4	92
	현존건조물방화	49	1	50
	현존건조물방화치사	4	0	4
	현존건조물방화치상	15	0	15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1	0	1
	현존자동차방화	1	0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340	10	35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13	0	1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2	1	33
	현주자동차방화	1	0	1
	전체	810	32	842
총 계		202,566	4,453	207,019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6. 1.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배임수증 재범죄	배임수재	497	42	539
	배임증재	286	23	309
	전체	783	65	848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524	83	607
	전체	524	83	607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1	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84	13	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24	0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4,169	216	4,385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75	6	8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280	21	30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137	21	158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	1	2
	전체	4,871	278	5,149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감금	85	6	91
	감금치상	35	8	43
	노인복지법위반	10	0	10
	아동복지법위반	176	12	188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4	1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3	1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54	9	6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0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1	0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등의 아동학대)	10	1	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0	1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2	1	3
	아동학대치사	1	0	1
	영아유기	7	0	7
	영아유기치사	1	0	1
	유기	1	0	1
	유기치사	8	0	8
	존속감금	3	0	3
	존속유기	1	0	1
	존속체포치상교사	0	2	2
	중감금	6	0	6
	중감금치상	10	0	10
	청소년보호법위반	925	64	989
	체포	3	0	3
	체포치상	1	1	2
	특수감금	0	8	8
	특수감금치상	6	1	7
	폭처법(공동감금)	110	9	119
	폭처법(공동체포)	1	0	1
	폭처법(상습감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47	0	47
	학대	1	0	1
	학대치상	1	0	1
	전체	1,515	125	1,640
장물범죄	상습장물알선	1	0	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4	0	14
	장물보관	3	2	5
	장물알선	19	3	22
	장물양도	3	0	3
	장물운반	4	2	6
	장물취득	109	31	140
	특가법(장물)	0	1	1
	전체	153	39	192
권리행사 방해범죄	강요	6	4	10
	강제집행면탈	35	14	49
	권리행사방해	151	39	190
	권리행사방해교사	1	0	1
	폭처법(공동강요)	5	0	5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5	0	5
	전체	203	57	260
업무방해 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50	21	71
	경매방해	12	6	18
	업무방해	1,548	329	1,877
	업무방해교사	2	1	3
	입찰방해	20	3	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1	2
	전체	1,633	361	1,994
손괴범죄	문서손괴	8	2	10
	재물손괴	546	130	676
	재물손괴교사	2	0	2
	재물손괴치상	2	0	2
	전자기록등손괴	1	0	1
	특수손괴	14	1	15
	특수재물손괴	68	15	83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45	11	5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6	0	6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25	1	26
	폭처법(특수손괴)	1	0	1
	전체	720	160	880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 2015. 12.	2016. 1.	전체
사행성· 게임물법 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816	225	1,041
	경륜경정법 위반	1	1	2
	관광진흥법 위반	2	1	3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39	14	53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54	25	79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0	13	13
	도박개장	111	22	133
	도박공간개설	115	46	161
	도박장소개설	82	11	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179	54	233
	한국마사회법 위반	70	4	74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0	6	6
	전체	1,469	422	1,891
총 계		11,871	1,590	13,461

※ 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는 2015. 7.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16. 3. 28. 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16. 3. 30. ~ 4. 18. : 관보 게재용 파일 편집
- 2016. 4. 20.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16. 4. 25. :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korea.go.kr>)
- 관보 게재용 양형기준은 별첨 자료와 같음

Ⅲ.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완료

2. 추진 경과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2016. 4. 29.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2016. 5. 15.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2016. 6. 24.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2016. 7. 1.

IV.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및 책자 발간

1. 개요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에 대하여 판결문 및 형사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각 범죄의 처리현황,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양형인자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

2. 분석 대상

-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선고된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의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사건(1심) 2,228건

3. 분석의 의의

- 양형기준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범죄의 범죄유형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4. 조사 및 분석 내용

- 세부 조사 내역은 [별지1] 「세부범죄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과 같음
- 분석 내용은 별책 「제5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Ⅱ」 기재와 같음

V.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 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72차 회의(2016. 4. 18.)에서 의결한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나. 조회 기간

- 2016. 4. 19. ~ 2016. 5. 18.

다. 회신 기관

○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 30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30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라. 회신자료

- 별첨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절도범죄

- **상습절도(포괄일죄)에 대한 처리 기준 명확화 필요**
 - 상습절도는 다수의 범죄가 포괄일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가 함께 있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에서도 대인절도, 침입절도가 함께 있는 경우 등)의 처리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경우, 권고형이 가장 중한 유형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식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상습절도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중 일부의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수 개의 절도범죄가 1개의 상습절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중 1개의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¹⁾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50개의 절도범죄 중 1개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와 ‘2개의 절도범죄 중 1개의 범죄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를 달리 볼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 반복”의 이중 평가**
 -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범행 수법의 유사성은 상습성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 중 하나임
 - 그렇다면 “상습범인 경우”를 일단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고,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를 또다시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상습성이라는 요소를 이중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많은 경우 특별가중영역(가중영역 권고형의 상한을 1/2 가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거나, 1개의 특별감경인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

1)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의 침입, 흥기 휴대, 야간손괴주거침입,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

음

- 따라서 ①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②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를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음(현재는 특수한 수법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다른 양형기준, 특히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비하여 다소 높음**

- 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사기죄의 양형기준 보다 다소 높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근거
 - ▶ 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피해액 1억 ~ 5억 원 미만의 기본형은 1년 ~ 4년이고,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1억 ~ 5억 원 미만의 기본형은 2년 ~ 5년임
 -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양형기준 중 누범절도(1유형)의 기본형은 1년 6월 ~ 3년이고, 절도 과정에서 도구 등을 사용한 경우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2년 6월 ~ 4년임
 - ▶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1억 ~ 5억 원에 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입는 고통도 사기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장물범죄 양형기준**

- 절도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① 상습장물범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가 각기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② 개개의 범죄 중 일부에만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수정안 주요 내용**

- 2016. 4. 18. 제72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절도 및 장물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경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하며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등 양형기준을 수정하였음

- ▶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 일부 조정
- ▶ 형량범위 일부 수정
- ▶ 양형인자 일부 수정

○ 검토의견

-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 일부 조정(절도, 장물) : 찬성**
 - 수정안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 2. 26. 선고 2014헌가16)을 반영한 것으로 찬성함
 - 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9조 제2항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을 포함시킨 것은 관련 법령의 삭제와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반영한 것이므로 찬성의견
- **형량범위 일부 수정 : 찬성**
 - 장물범죄의 경우 수정안의 요지는 종전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의 권고형량 범위에 준하여 누범장물 형량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정형 및 일반재산에 대한 범죄와의 균형 등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찬성함
 - 절도범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의 형량을 법정형이 각각 2년 이상(유형 1), 3년 이상(유형 2)인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위험과 비난가능성 등을 양형범위에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찬성함
- **법정형 변경을 반영한 유형 분류 조정 및 서술식 양형기준 삭제 : 찬성**
 - 유형 분류의 경우 변경된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인 범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 유형으로 재분류한 것이고, 서술형 삭제의 경우 법정형 변경 후 유형2에 포섭되고 그 외 부분은 삭제된 부분을 적절히 고려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
- **양형인자의 일부 수정 : 찬성**

- 절도, 장물범죄의 경우 상습범 부분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형법과의 법정형 차이 및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 전체 체계를 고려한 타당한 변경으로 보임
- 특수한 수법 등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가중인자로 고려할 필요성은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보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의 가중요소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감경요소인 점과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 법무부

○ 검토배경

- '16. 4.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대검(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의견 취합 필

○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법정형의 변경을 권고 형량범위 및 유형분류에 반영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일부 조항(상습절도, 상습장물, 누범단기가중)에 대한 삭제 및 개정
-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범행을 기존의 양형기준에서는 별도 유형으로 구분했으나 수정안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절도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 및 검토의견

- 특가법상 절도 유형의 형량범위 상향 필요
 - ▶ (수정안) 수정안은 절도 범죄군 중 특가법상 절도 유형을 새로운 유형으로 조정·분류하고 형량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2년6월-4년 1년-2년6월	3년-5년 1년6월-3년	4년-7년 2년6월-4년
2	상습누범절도	2년3월-6년 1년6월-3년	3년-7년6월 2년-4년	4년6월-10년6월 3년-6년

- ▶ 1유형은 5인 이상의 공동·상습절도(특가법 제5조의4 제2항), 3회

이상의 징역형 이후 누범절도(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경우(법정형 징역 2년~20년),

- ▶ 2유형은 2회 이상의 상습절도 실행 후 상습누범(같은 조 제6항)의 경우(법정형 징역 3년~25년)

- ▶ (검토) 수정안의 형량범위는 가중영역의 상한이 각 4년, 6년으로 특별조정하더라도 상한이 6년, 9년에 불과하여 법정형에 비하여 과경

※ 수정안의 형량범위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의 변경(무기 또는 3년·5년 이상의 징역 → 징역 2년 ~ 20년 또는 징역 3년 ~ 25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별도로 양형기준을 규정할 필요

- ▶ (수정안)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

- ▶ (검토) 상습범(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포함)을 특별가중인자로만 규정하면 특별조정하더라도 상한이 유형별로 9월 내지 9년으로 법정형에 비해 과경하여 별도 양형기준으로 규정할 필요

※ 일반절도의 상습범은 9년 이하의 징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상습범은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의 상습범은 징역 1년 ~ 15년으로 수정안의 형량범위와 큰 차이

- 일반양형인자인 '2인 이상 합동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할 필요

- ▶ (수정안) 일반재산 및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특수절도의 구성요건 중 '흉기휴대'는 '특별양형인자'로, '2인 이상 합동'은 '일반양형인자'로 반영

- ▶ (검토) 두 유형의 절도는 법정형이 동일하고 '2인 이상 합동'과 '흉기휴대'의 위험성이 상이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두 양형인자를 동일하게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함이 상당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흉기를 휴대한 경우(4유형)'의 문제점

- ▶ (수정안)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중 '흉기휴대'를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침입절도에 한정

- ▶ (문제점) 방치물 등 절도(1유형), 일반절도(2유형), 대인절도(3유형)

를 불문하고 흉기휴대 범행은 위험성의 증대로 인해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에 가중인자로 규정함이 상당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와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관련

-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는 상습범인 경우와 상습범이 아닌 경우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로서 이를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현행 수정안	변경안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장물범죄군의 경우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의 양형인자에서 상습범을 제외하지 않음

○ 장물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 내용 및 의견

- 누범장물 유형의 형량범위 상향 필요

- ▶ (수정안) 특가법상 누범장물 범행에 아래와 같이 형량범위를 설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장물	1년6월-3년 1년-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6년 2년-4년

- ▶ (검토) 수정안은 법정형(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범위가 과경하고 특히, 절도 범죄군 중 특가법상 절도의 제1유형과 법정형이 동일(2년 ~ 20년)함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형량범위가 상이

- 형법상 상습범의 경우 별도로 양형기준을 규정할 필요

- ▶ 형법상 상습 장물범에 대하여 특별가중인자로만 설정하면 가중영역의 상한이 징역 4년이고 특별조정을 하더라도 상한이 6년에 불과하여 법정형(징역 1년 ~ 10년)에 비하여 과경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형기준안의 개요(절도범죄)

- 절도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그리고 특수절도(제331조)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특히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의 개정(2016년 1월 6일)을 양형기준안에 반영함
- 동법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2항3)을 삭제한 것을 양형기준안에 반영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개정전	개정후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헌법재판소 2015.2.26. 2014헌가16·19·23(병합):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u>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개정 2016.1.6.>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전	개정후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2016.1.6> [전문개정 2010.3.31]
---	---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 형 인 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전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 형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2유형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 형 인 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 형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검토의견

- 일반재산의 절도의 특별양형인자에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는 이유서에 따르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와 중복 적용될 여지가 있어서 상습범인 경우에만 고려하도록 하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는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한 것이라고 함(6면)
- 그런데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경우는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제4유형)”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아니면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만약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제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게 되는데(마찬가지로 일반양형인자에서도 고려되지 않음) 이것을 의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양형기준 -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양형기준안은 2016년 1월 6일 절도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한 특가법 개정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 우선 특가법상 절도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로 양형기준 “3. 상습·누범절도”에서 제1유형인 “일반상습·누범절도”를 삭제하는 한편 표제를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로 개정하고 그 유형도 새로이 “1. 공동상습·누범절도”와 “상습누범절도”로 구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또한 제3형종의 기본형량을 하향조정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형종(3.)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라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상습범을 특별양형인자(“행위”·“행위자/기타”)로 반영하여 상습범에 대한 중한 가벌성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사료됨

- 유형의 정의 -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종전에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해당하던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와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를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종전에 제2유형에 규정하던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2항”에서 “또는 제9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특가법 제9조 제2조를 삭제한 것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됨

○ 종합의견

- 절도범죄 양형기준안은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지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양형기준안의 개요(장물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2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 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검토 의견

- 장물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이 2016년 1월 6일 특가법 개정에 따라 장물범죄 양형기준에서 대상범죄 형법 제363조에 정한 상습장물을 포함시키고 장물범죄의 상습범을 특별

양형인자로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가법상 상습장물죄의 삭제에 따라 누범장물의 형량을 하향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대한법무사협회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위원회의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각 의견 조희 요청(기획운영과-923, 2016. 4. 19.) 관련입니다.
- 우리협회는 위 양형기준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VI. 외국 양형제도 파악을 위한 교류

1. 개요

- 양형위원회가 합리적인 양형정책을 수립하고 양형기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 양형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 캐나다와 미국의 양형심리 과정과 상급심의 양형정책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를 통하여 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성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

2. 캐나다 대법원과 미연방 제7항소법원 등 방문

- 방 문 자 : 이진강 위원장, 박정화 위원(법원), 박광민 위원(교수), 정현미 위원(교수), 차병직 위원(경험·학식), 운영지원단장
- 기 간 : 2016. 6. 4.(토) ~ 2016. 6. 12.(일) [7박 9일]
- 국 가 : 캐나다, 미국
- 방문기관 : 캐나다 대법원, 온타리오 주 상급법원, 미연방 제7항소법원

3. 세부 일정

일차	월일	국가(지역)	교통편	현지시각	출장내용
1	6.4.(토)	한국(인천)	KE0073	09:35	인천 공항 출발
		캐나다(토론토)		09:55	토론토 피어슨 공항 도착
2	6.5.(일)	캐나다(토론토)			법원 방문 자료 준비
3	6.6.(월)	캐나다(토론토)		오전	온타리오 주 상급법원 방문
		캐나다(킹스턴)		오후	킹스턴으로 이동, 법원 방문 자료 정리
4	6.7.(화)	캐나다(오타와)			오타와로 이동 법원 방문 자료 준비
5	6.8.(수)	캐나다(오타와)		오전	캐나다 대법원 방문
		캐나다(몬트리올)		오후	몬트리올로 이동, 법원 방문 자료 정리
6	6.9.(목)	캐나다(몬트리올)	AC7593	10:50	몬트리올 피에르엘리엇트루도 공항 출발
		미국(시카고)		12:09	시카고 오헤어 공항 도착, 법원 방문 자료 준비
7	6.10.(금)	미국(시카고)		오전	미연방 제7항소법원 방문
8	6.11.(토)	미국(시카고)	KE0038	12:35	시카고 오헤어 공항 출발
9	6.12.(일)	한국(인천)		16:25	인천 공항 도착

V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03차	2016. 6. 20. 16:00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및 영업비밀 유출 양형기준 에 대한 수정 여부 검토

VIII. 2016 양형기준 책자 발간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운영지원단은 신설된 제5기 전반기 양형기준(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과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 지금까지 설정이 완료된 모든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양형기준 책자의 발간을 통하여 공개하였음을 보고

2. 추진 경과

- 제5기 양형기준 책자 발간 계획(안) 결재 : 2016. 6. 1.
- 초안 완성 및 견본 제작 : 2016. 6. 2.
- 교정 작업 및 인쇄 의뢰 : 2016. 6. 15.
- 배부 및 국회 보고 : 2016. 6. 27.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7,8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620쪽

4. 국회 보고

- 법제사법위원회 각 위원실 방문하여 양형기준 책자 인편으로 배송 완료
- 나머지 의원의 경우 사서함을 통하여 배송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양형기준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 선정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전국 법원 형사법정에도 비치), 헌법재판소, 검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주요 시민단체, 언론기관, 주요 도서관 등

IX. 전문위원 개임, 연임위촉 및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전문위원 개임 및 연임 위촉

가. 개요

- 2016. 4. 22.자로 이재권 수석 전문위원 및 황병헌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2016. 5. 15.자로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 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위촉 내역

(1) 신규 위촉

- 수석 전문위원 : 김경환 서울고등법원 판사(2016. 4. 23.자)
- 전문위원 : 정준화 서울고등법원 판사(2016. 4. 23.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참조

(2) 연임 위촉

-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6. 5. 16.자)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16. 5. 16.자)
-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6. 5. 16.자)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6. 5. 16.자)

라. 진행 경과

- 2016. 4. 22.자로 이재권 수석 전문위원 및 황병헌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2016. 4. 23.자 김경환 수석전문위원, 정준화 전문위원 위촉
- 2016. 5. 15.자로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각 임기만료
- 2016. 5. 16.자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각 연임 위촉

마. 전문위원 구성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교수
수석 전문위원	김경환						
제1팀	정준화	정준화	이용	박수정	박지선	이진국	최준혁
제2팀	김현아	안종열	김현아	범현	강수진	김혜경	노수환

2.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6. 7. 11.(월) 15: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김경환 수석 전문위원, 정준화 전문위원

X.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6. 7. 11. 양형위원회 제73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6. 7. 중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6. 7. 하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X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73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대상 기관 선정(안)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9		조 달 청	운영지원과장
10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11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2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3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4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5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7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8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19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0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3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4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25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26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27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6. 7. 12. ~ 8. 5.

○ 의견조회 취합 : 2016. 8. 6.

※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제74차 회의 시 보고 예정

X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6. 4. 5.	○ 원문 부분에 특별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목 부분에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
2	2016. 4. 25.	○ 외국(스웨덴)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양형기준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장기간 학대 후 마지막 사망순간에 가해자의 범의만으로 살인이나 과실치사냐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범죄의 잔인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3	2016. 4. 25.	○ 아동에 대한 범죄는 원인제공의 유무, 방어능력 유무 등에 있어서 성인간의 살인 및 학대치사와는 다른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은 지양해야하고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4	2016. 4. 25.	○ 아동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정서 및 법감정과 괴리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
5	2016. 5. 5.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6	2016. 5. 9.	○ 시대별 양형기준의 변천에 관한 자료 요청
7	2016. 5. 10.	○ 최근 화제가 된 아동학대살인사건 일명 ‘원영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살인의 개념을 ‘치사’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살인죄의 강력범죄에 준하여 처

		벌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및 그로 인한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 ‘참여광장’란에 게시글을 게시한 후 수정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 공개 요청
8	2016. 6. 8.	○ 양형위원회에서 편찬한 <2015 양형기준 책자>의 49쪽 혹은 성범죄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03.처리방법) 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참여광장(양형위원회에 바란다)에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운영지침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아동학대에 관한 양형기준이 외국에 비해 낮고 장기간의 학대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사망 순간 가해자의 범의만으로 고의범, 과실범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우려와 염려, 범죄의 잔인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

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아동에 관한 범죄는 원인제공의 유무, 방어능력의 유무 등에 있어서 성인간의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되어야 하고 반드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아동폭력에 대한 양형이 국민정서 및 법감정과 괴리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며,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고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2007. 4. 27. 설립된 이후 외국 양형제도 연구, 국민 일반의 양형에 대한 인식 조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공청회 및 의견조회 절차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30여개 이상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 일반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양형기준의 변천 내용, 예컨대 과거 양형기준 및

시행중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양형기준 부분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원영이 사건’과 같은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아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귀하의 말씀, 아동학대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아동학대살인의 개념을 ‘치사’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살인죄의 강력범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및 그로 인한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광장은 비공개를 전제로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므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당사자가 게시한 글에 한해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과 협의하여 기술적으로 위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5 양형기준 책자>의 49쪽 혹은 성범죄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03.처리방법) 중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란 경합범 중 상상적 경합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2. 서면 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6. 5. 13.	○ 가. 형법 제35조 나. 경합범 제37조, 제38조 위 법률이 정하는 가중 형량의 범위, 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관련 : 청구인의 범죄사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교사)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합산한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근거해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별지1]

<세부범죄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 세부죄명별 조사건수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조사
도주·범인은닉 범죄	도주	9	9
	범인도피	451	393
	범인은닉	29	18
	위조증거사용	2	2
	증거변조	1	1
	증거위조	9	9
	증거은닉	6	4
	증거인멸	14	13
	소 계	521	449
통화·유가증권 범죄	변조유가증권행사	1	0
	부수법(2조1항)	9	9
	부수법(2조2항)	610	564
	부수법(4조)	24	23
	부수법(5조)	17	15
	위조유가증권행사	84	78
	위조통화지정행사	1	0
	유가증권변조	1	1
	유가증권위조	6	5
	통화위조	11	8
	통화위조행사	4	4
	소 계	768	707
대부업법위반 범죄	대부업법(19조1항1호)	678	635
	대부업법(19조1항3호)	4	3
	대부업법(19조1항4호)	2	2
	대부업법(19조2항1호)	1	1
	대부업법(19조2항2호)	2	2
	대부업법(19조2항3호)	172	159
	대부업법(19조2항6호)	53	48
	채권추심법(15조1항)	23	22
	채권추심법(15조2항)	4	4
	소 계	939	876
전 체		2,228	2,032

○ 법원별 조사건수

단위: 명, %

법원명		범죄군			전체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서울중앙	수	35	86	69	190
	비율	18.4	45.3	36.3	100.0
서울동부	수	10	39	28	77
	비율	13.0	50.6	36.4	100.0
서울남부	수	17	40	20	77
	비율	22.1	51.9	26.0	100.0
서울북부	수	16	37	34	87
	비율	18.4	42.5	39.1	100.0
서울서부	수	12	35	20	67
	비율	17.9	52.2	29.9	100.0
의정부	수	9	38	11	58
	비율	15.5	65.5	19.0	100.0
고양	수	6	22	18	46
	비율	13.0	47.8	39.1	100.0
인천	수	44	60	113	217
	비율	20.3	27.6	52.1	100.0
부천	수	19	17	18	54
	비율	35.2	31.5	33.3	100.0
수원	수	17	30	26	73
	비율	23.3	41.1	35.6	100.0
성남	수	10	16	5	31
	비율	32.3	51.6	16.1	100.0
여주	수	3	5	24	32
	비율	9.4	15.6	75.0	100.0
평택	수	15	7	8	30
	비율	50.0	23.3	26.7	100.0
안산	수	13	24	5	42
	비율	31.0	57.1	11.9	100.0
원주	수	6	2	21	29
	비율	20.7	6.9	72.4	100.0
대전	수	15	29	23	67
	비율	22.4	43.3	34.3	100.0
홍성	수	12	1	33	46
	비율	26.1	2.2	71.7	100.0
천안	수	15	7	12	34
	비율	44.1	20.6	35.3	100.0
청주	수	9	8	12	29
	비율	31.0	27.6	41.4	100.0
대구	수	13	31	103	147
	비율	8.8	21.1	70.1	100.0
대구서부	수	12	25	58	95

단위: 명, %

법원명		범죄군			전체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비율	12.6	26.3	61.1	100.0
경주	수	2	2	15	19
	비율	10.5	10.5	78.9	100.0
부산	수	43	46	60	149
	비율	28.9	30.9	40.3	100.0
부산동부	수	6	14	8	28
	비율	21.4	50.0	28.6	100.0
울산	수	16	7	11	34
	비율	47.1	20.6	32.4	100.0
창원	수	16	12	24	52
	비율	30.8	23.1	46.2	100.0
통영	수	9	5	15	29
	비율	31.0	17.2	51.7	100.0
광주	수	16	18	45	79
	비율	20.3	22.8	57.0	100.0
순천	수	13	5	7	25
	비율	52.0	20.0	28.0	100.0
전주	수	13	7	10	30
	비율	43.3	23.3	33.3	100.0
제주	수	5	16	13	34
	비율	14.7	47.1	38.2	100.0
안양	수	2	16	7	25
	비율	8.0	64.0	28.0	100.0
전체	수	449	707	876	2,032
	비율	22.1	34.8	43.1	100.0

[별지2]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김 경 환 (金 敬 桓)
	생년월일	1970년 6월 4일
	출 생 지	경북 대구
	직 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연 락 처	02-530-2818
학 력		
○ 1989. 대구오성고등학교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7.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 2008.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		
○ 2009. 법원행정처 기획제1담당관		
○ 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1.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 [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 신입 전문위원 프로필

	성명	정준화 (鄭俊和)
	생년월일	1967년 5월 3일
	출생지	경북 경주
	직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연락처	02-5302-2345
학 력		
○ 1985. 경주고등학교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주요경력		
○ 1988. 제3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1. 내무부(경북도청) 근무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3.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2011.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2012. ~ [現] 서울고등법원 판사		